

의안번호	2125949
의 퇴 인	신현영의원
회 답 일	2024.1.5.
추계번호	23C46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640만원, 2029년 2,640만원 등 5년간 총 1억 3,200만원(연평균 2,640만원)으로 추계됨

○ 한 달에 한 번 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안 제62조의2)	26.4	26.4	26.4	26.4	26.4	132	26.4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위원회의 규모,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3항 (국가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제13호)	의무규정
2	안 제10조제1항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현황(제7호)	의무규정

3	안 제69조의2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 자격취득 적합 여부 심사, (2) 사업 허가·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둔 - 판정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1항)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으로 함(제2항) - 이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3항 (국가계획의 수립)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2	안 제10조제1항 (실태조사)		
3	안 제69조의2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69조의4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7조제3항·제10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 국가계획 및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나, 이는 기존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내용 확대 시에도 기존 예산 내에서 수립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계획)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제도 단계적 철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실태조사)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나,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¹⁾
- (예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이 수행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으며, 실태조사의 경우 “지역사회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2020.3.~2021.12.)에 8억 2,200만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2022.4.~2022.12.)에 7억 5,500만원을 배정하였음
- (안 제69조의4) 현시점에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정신질환자의 수를 예측할 수 없어 심사 결과의 서면 통보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69조의3제1항은 정신질환의 사유로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정신질환의 사유로 취업 또는 사업 등에 제한을 받은 사람을 판정심사 청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 자격, 청구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심사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2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F코드)로 치료받은 실인원(입원 및 외래)은 259만 3,148명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의 규모, 운영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

1)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나,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며, 회의수당 외에 위원회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과 관련한 심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의 횟수와 위원회 위원 수 및 회의 수당의 곱으로 추계
 - (회의 횟수) 현행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²⁾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매월(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동법 제46조제2항·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없으므로 향후 소위원회 운영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³⁾
 - (위원 정수) 개정안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위원회 총 위원 수를 15명으로 하며,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촉 위원은 11명으로 가정
 - － 안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 1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1인, 고용노동부 공무원 1인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
 - (회의 수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수당 및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을 준용하여 1회 20만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서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된 위원회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3)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4개소)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연 2~3회 개최하고 있음

4)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640만원, 2029년 2,640만원 등 5년간 총 1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69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6.4	26.4	26.4	26.4	26.4	132	2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